

범칙금 영수증(경범죄)

(위반자용)

통고서번호	-3-	회계	☐ 경찰청 소관 ☐ 해양경찰청 소관 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관	세입 징수관서	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
납부고지일	년 월 일	계좌번호			
(1차) 납부기한	년 월 일	금액		원	
(2차) 납부기한	년 월 일	가산금액		원	
성명			주민등록번호	-	

흰
색

※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
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은행(우체국) 지점

수납자인	취급점영수인

(위반자용)

범칙금 납부통고서(경범죄)

통고서번호: -3-

(1차)납부기한	년 월 일		금액	원
(2차)납부기한	년 월 일		가산금액	원
적용 법조문	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 항제 호		범칙내용	
범칙자	성명	직업	주민등록번호	-
	주소		전화번호	
범칙행위	일시	년 월 일 시 분		
	장소			

주
황
색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 (범칙자)

(서명 또는 지장)

「경범죄처벌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
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

직인

알 림

-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-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(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,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)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(생활질서계), 해양경찰서(안전관리계)·파출소 또는 출장소, 자치경찰대, 철도특별사법경찰대·센터·출장소에 가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

조항	범 칙 행 위	금액	범조문	범 칙 행 위	금액
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 관련					
제1호	빈집 등에의 침입	8만원	제19호	불안감조성	5만원
제2호	홍기의 은닉휴대	8만원	제20호	음주소란 등	5만원
제3호	폭행 등 예비	8만원	제21호	인근소란 등	3만원
제5호	시체 현장변경 등	8만원	제22호	위험한 불씨 사용	8만원
제6호	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	8만원	제23호	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	3만원
제7호	관명사칭 등	8만원	제24호	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	5만원
제8호	물품강매·호객행위		제25호	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	5만원
	가. 물품강매, 요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가 요구	8만원	제26호	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	
	나. 호객행위	5만원		가.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	5만원
제9호	광고물 무단부착 등			나.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	8만원
	가. 광고물부착, 기재 및 광고물 살포	5만원	제27호	무단소등	5만원
	나. 타인 간판 등 이동 및 훼손	8만원	제28호	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	5만원
제10호	마시는 물 사용방해	8만원	제29호	공무원 원조불응	5만원
제11호	쓰레기 등 투기		제30호	거짓 인적사항 사용	8만원
	가. 쓰레기, 죽은 짐승 등 투기	5만원	제31호	미신요법	2만원
	나. 담배꽂초, 껌, 휴지 투기	3만원	제32호	야간통행제한 위반	3만원
제12호	노상방뇨 등		제33호	과다노출	5만원
	가. 대소변을 보는 행위, 동물대변 미수거	5만원	제34호	지문채취 불응	5만원
	나. 침 뱉는 행위	3만원	제35호	자릿세 징수 등	8만원
제13호	의식방해	8만원	제36호	행렬방해	5만원
제14호	단체가입 강요	5만원	제37호	무단 출입	2만원
제15호	자연훼손	5만원	제38호	총포 등 조작장난	8만원
제16호	타인의 가축·기계 등 무단조작	8만원	제39호	무임승차 및 무전취식	5만원
제17호	물길의 흐름 방해	2만원	제40호	장난전화 등	8만원
제18호	구걸행위 등		제41호	지속적 괴롭힘	8만원
	가.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게 얻은 이익을 얻는 행위	8만원			
	나. 구걸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	5만원			
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2항 관련					
제1호	출판물의 부당게재 등	16만원	제3호	업무방해	16만원
제2호	거짓 광고	16만원	제4호	암포매매	16만원